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 삭제 등〉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95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참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가입 현황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07. 09.
3. 회 부 일 : 2025. 0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의 활동 중 기관장과의 협의 등의 사항을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는 분기별 1회,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는 매년 2회까지 허용되어 있으므로 협의회등의 회원 수가 수만에 이를 경우 내부 협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법 하에서는 협의회등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에 적용되고 있는 근무시간면제제도를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에도 도입하여 협의회등의 설립 취지에 맞는 안정적인 활동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협의회 활동은 기관 내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기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기관 구성원이 자유롭게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수의 손실 없이 협의회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신설).
- 나.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인원 한도 등을 정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및연합협의회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 다. 심의위원회가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 라.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동의는 무효로 함(안 제5조의3제4항 신설).
- 마. 기관장 등이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시간, 사용인원 및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 바. 특정 공무원에 대한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u>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 협의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구로서,¹⁾ 현행 법상 직급별 가입 제한은 없으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이 제한됨.²⁾

- 1)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가.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나. 경찰공무원
 - 다. 소방공무원
 3. 삭제
 4. 삭제
 5. 별정직공무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1. 삭제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시행령 제3조) >

구 분	세부업무
지휘·감독권 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행정규칙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주된 업무의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 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 하는 모든 직책 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 포함)
인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 업무 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
예산·경리·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물품관리만 해당)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교·군사·감사·조사·수사·검찰사무·출입국관리·유선교환 등 기밀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보안·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청사관리를 관장하는 기관이나 부서, 교정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을 위해 특정인이나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 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안은 협의회 활동이 기관 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공무원이 직책·직무의 제한 없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관 내 직무 순환이 일반적인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를 감안할 때, 특정 시점에 특정 직책·직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전체 구성원의 권익 보호 및 조직 대표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협의회에 가입할 경우 그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공무원들의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고, 인사·예산·기밀·보안·경비 업무 종사 공무원의 협의회 참여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행정안전부는 협의회 운영 개선을 위해 가입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안전보장 및 공공의 안녕을 고려하여 지휘·감독자와 인사·예산·기밀·보안·경비 담당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하되, 경리·물품출납·비서 직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임.

2.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³⁾(이하 “협의회등”) 소속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보수 손실 없이 협의회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와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협의회등 소속 공무원은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협의회등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

현행	개정안
<신 설>	<u>원직장협의회및연합협의회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③ <u>심의위원회는 제2조제2항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회등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구성원의 수를 고려하되 협의회등의 조직형태, 교섭구조·범위 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u> ④ <u>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u> <u>제5조의4(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u>

- 3)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나. 검토의견

현행법 및 시행령은 협의회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기관장과의 협의, 분기별 1회의 내부회의, 연 2회의 대표자 간 회의에 한하여 근무시간 중 활동을 허용하고 있음.⁴⁾

협의회등과 유사한 기구의 근무시간 면제제도⁵⁾ 도입 현황을 살펴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조합의 유지·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근무시간 면제가 인정되는 반면,⁶⁾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협의회의등의 활동) 협의회의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법 제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2.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의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5) 근무시간 면제제도(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의 동의 및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근무시간 중 일정 범주의 활동을 보수의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제8조제1항의 정부교섭대표(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에서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정부교섭대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해당 기관의 근무

민간 노사협의회는 “위원의 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한정하여 근로시간이 인정되어,⁷⁾ 근무시간 면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비교 >

구 분	공무원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
법적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설립목적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증진, 단체협약 체결, <u>단체교섭</u>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의 실질적 조정	기업 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근로조건·복지·고충처리 등 <u>사용자와의 협의</u>	기관 내 근무환경 개선, 업무효율 증진, 고충처리 등 <u>기관장과의 협의</u>	-
근무시간 면제대상 업무 및 범위	정부대표와 <u>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노동조합 유지·관리</u>	위원의 <u>협의회 출석 시간</u> 및 이와 <u>직접 관련된 시간</u>	<u>기관장과의 협의</u> , 협의회 <u>내부회의</u> (분기 1회), <u>협의회 간 회의</u> (연 2회)	<u>기관장과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협의회 유지·관리</u>
근무시간 면제 한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3년마다 재심의)	-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3년마다 재심의)
면제의 한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동의는 무효	-	-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동의는 무효
정보공개	근무시간 면제 시간, 인원, 보수 등 공개	-	-	근무시간 면제 시간, 인원, 보수 등 공개

그런데 회원수가 많은 협의회등의 경우 내부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제한된 횟수의 회의만으로는 기관 내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고충처리 등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협의회등 소속 공무원이 기관장의 동의와 근무시간

시간 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면제 한도 내에서, 보수 손실 없이 근무시간 중에 “기관장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및 안전·보건활동 등 업무, 협의회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협의회등 활동의 안정적인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기관 내 의견수렴과 신속한 고충처리, 내부 소통 활성화, 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노동조합보다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⁸⁾을 감안할 때, 공무원 노동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개정안과 같이 “기관장과의 협의·교섭”을 근무시간 면제 대상으로 명시할 경우, ‘교섭’이라는 표현이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⁹⁾과 유사한 개념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8) 문무기, 「공무원 직장협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21권 제1집, 2010. p.176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이하 생략)

제9조(교섭의 절차) ① 노동조합은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업무와 협의회등의 유지·관리업무”로 근무시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문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법 제5조제1항10)에 규정된 “협의회등의 협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행정안전부는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동 제도가 공무원 노동조합에 도입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아 미정착 단계이고, 2022년 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일부 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및연합협의회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¹¹⁾를 2026년 3,800만원, 2029년 2,100만원으로 추계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338

10) 「공무원직장협의회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11) 3년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예산

참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가입 현황'22.12.31. 기준

구 분		직협 설립 수 및 가입인원
총 계		579개 기관 / 90,149명
헌법기관 [1개/51명]		헌법재판소(51)
중앙부처 [102개/ 6,598명]	교육부 (31개/3,303명)	강릉원주대(110), 강원대(264), 경상국립대(288), 경인교대(77), 공주교대(42), 공주대(116), 국사편찬위(33), 군산대(152), 금오공대(40), 대구교대(48), 목포대(105), 목포해양대(99), 부경대(240), 부산교대(45), 서울과기대(102), 전주교대(8), 제주대(203), 진주교대(44), 창원대(98), 청주교대(33), 춘천교대(35), 충남대(209), 충북대(112), 한경대(70), 한국교원대(132), 한국교통대(120), 한국방통대(209), 한국복지대(36), 한국선진학교(40), 한국해양대(100), 한밭대(93)
	산업통상자원부 (1개/97명)	국가기술표준원(97)
	보건복지부 (1개/95명)	국립나주병원(95)
	고용노동부 (52개/2,426명)	본부(217), 서울청(75), 서울강남지청(52), 서울동부지청(64), 서울서부지청(40), 서울남부지청(32), 서울북부지청(67), 서울관악지청(32), 중부청(68), 인천북부지청(54), 부천시청(49), 의정부지청(56), 고양지청(47), 경기지청(67), 성남지청(30), 안양지청(34), 안산지청(35), 평택지청(18), 강원지청(29), 강릉지청(22), 원주지청(31), 태백지청(8), 부산청(99), 부산동부지청(39), 부산북부지청(42), 창원지청(93), 울산지청(64), 양산지청(52), 진주지청(39), 통영지청(33), 대구청(115), 대구서부지청(73), 포항지청(60), 구미지청(44), 영주지청(16), 안동지청(8), 대전청(128), 청주지청(53), 천안지청(87), 충주지청(29), 보령지청(19), 서산출장소(24), 중앙노동위(23), 서울지노위(26), 부산지노위(11), 경기지노위(18), 충남지노위(14), 경북지노위(14), 경남지노위(10), 충북지노위(6), 산재보험재심사위(27), 고객상담센터(33)
	국토교통부 (1개/25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25)
	질병관리청 (1개/67명)	질병관리청(67)
	기상청 (15개/585명)	본청(150), 수도권청(40), 부산청(25), 광주청(22), 전주지청(28), 강원청(33), 대전청(26), 청주지청(20), 대구청(40), 제주청(27), 국가기상위성센터(27), 기상레이더센터(28), 국립기상과학원(36), 항공청(55), 수치모델링센터(28)

구 분		직협 설립 수 및 가입인원
자치단체 [25개/ 14,947명]	서울 (11개/8,460명)	동대문(964), 강북(1,400), 성북(900), 강서(1,000), 동작(371), 금천(650), 관악(816), 서초(700), 강남(245), 송파(1,406), 서울대공원(8)
	대구 (7개/4,501명)	상수도사업본부(523), 중구(403), 동구(890), 서구(300), 수성(831), 달서구(1,004), 달성(550)
	인천 (1개/150명)	강화(150)
	광주 (1개/25명)	의회사무처(25)
	대전 (1개/76명)	의회사무처(76)
	강원 (2개/1,157명)	홍천(719), 영월(438)
	경북 (1개/492명)	영양(492)
	경남 (1개/86명)	경남도의회사무처(86)
교육청 [2개/220명]		경기도교육청(200), 전남교육청(20)
경찰청(해경 설립기관 없음)		300개 기관 중 278개 기관 설립, 57,130명 가입
소방청		265개 기관 중 171개 기관 설립, 11,203명 가입